#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대응 방안 (對外秘)

2015. 8. 24. 기획조정실

## 1.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('인사모') 개설 및 활동 경과

### ▣ 개설 및 예비모임의 경과

- 2015. 7. 7. 박○○ 판사, 개설 제안 ⇨ 7. 21. 첫 예비모임(법관사회 내부 소통 및 사무분담 등 논의) ⇨ 8. 11. 두 번째 예비모임(상고법원 끝장 토론회) ⇨ 분과위원장 김○○, 총무 박○○, 박○○ 판사 확정

### ▣ 향후 활동 일정 및 예상

- 9. 14. '합의부의 운용'(재판장과 배석의 관계)을 주제로 정식 첫 모임 예정
- 차후 예상 논의 주제 :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문제점, 법관 관료화 등

## 2. 문제점

### ▣ 1전문분야연구회 관련 예규에 명백히 위배됨

- 법원행정처의 예산 및 전산자원을 지원받는 연구회의 소모임으로서, 그 존립근거인 전문분야연구회 관련 예규에 반하는 활동임

☑ '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행정예규'

▶**제1조,** 예규는 **전문법률분야 연구를 위한** 법관 연구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▶**제2조,** 예규에서 정하는 제반 요건을 갖추었을 때 행정처장에게 설립허가를 요청할 수 있고, 행정처장은 **설립목적과 예산사정 등을 참작하여 허가할 수 있다.**

▶**제8조,** 연구회의 활동은 **'해당 전문법률분야에 관한 연구논문의 발표와 외부자료의 소개', '해당 전문법률분야에 관한 토론 및 특정 쟁점에 관한 질의 응답', '해당 분야에 관한 법률심포지엄의 개최'** 등으로 한다.

▶**제9조,** 행정처장은 '**연구회성과 평가위원회'의 평가자료를 참작**하여 **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, 법원 네트워크 등 전산자원의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.**

☑ '국제인권법연구회 회칙'

▶ 제8조(활동)

연구회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.

1.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한 연구논문의 발표와 외부자료의 소개
2. 사법부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한 토론 및 특정 쟁점에 관한 질의 응답
3. 연구성과를 정리하여 법원 내에서 공유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
4.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한 법률 심포지엄, 세미나 등의 개최
5.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한 국제 교류
6. 그 밖에 연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

- 소모임의 논의 주제들은 '국제인권법' 전문법률분야에 관한 연구 등과 아무런 관련 없음 ⇨ 사적으로 하는 것은 몰라도 연구회의 이름을 빌린 연구회 내 소모임의 형태로 활동하는 것은 예규 및 회칙에 반함

▣ 2주요 구성원의 성향 등에 비추어 **대법원의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법원 내외부에 표출**할 가능성 높음

- 인적 구성 및 정치적 성향 측면에서 우리법연구회와 유사함
- 후견 역할을 하면서 연구회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재조·재야 선배들의 성향상 대법원 정책에 대한 반대의견표명의 자제를 적극 권유할 가능성도 낮음
- 국제인권법 커뮤니티에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언론 보도 가능성 높고, 연구회 회장과의 사전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큼
- 개인 의견이 아닌 법관 연구회의 자체 의견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성 큼

▣ 외부로 의견을 표출하지 않더라도, **소장 판사들에게 대법원의 정책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**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할 우려 큼

- 국제인권법연구회원의 강한 유대관계, 학술모임보다 사적인 인적 결합체로서의 분위기, 400명이 넘는 회원 수, 젊은 판사들의 연구회에 대한 애정 및 자부심과 적극 참여 분위기 ⇨ 소모임 활동으로 상당한 부정적 파급효과

우려

- 사망한 이○○ 판사와 폐암 투병 중인 박○○ 판사 모두 공교롭게 연구회 소속임 ⇨ **법관 업무과중 등의 문제에 대하여 심정적 결속력 강함**

## 3. 대응 방안 검토

▣ **1사전적 대응 vs. 추이 관망 후 의견표명시 대응 ⇨ 사전적 대응 필요**

- 인사모는 상고법원 등의 주요사법 현안에 대해 대법원과 상반되는 입장을 외부로 표명할 위험성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에서 본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

- 사전 대응시는 소모임의 논의주제 자체가 부적절하고 예규에도 반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사법제도에 대한 논의자체의 중단 적극 요구할 수 있으나, **관망 후 대응시는 '의견표명을 자제해달라'는 부탁 내지 권유에 그쳐 실효성이 적을 가능성** 큼

- 의견표명 시기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고, 인사모에서 의견을 정식으로 표명하기 전이라도 커뮤니티 게시글 등을 통해 언론보도가 될 가능성 있음

▣ **2우선 공론화하지 아니한 채 인사모 주도세력 상대 원만한 설득 시도**

- **연구회장 또는 연구회 선배(이○○ 등)이 소모임 주도세력(제안자 박○○ 판사, 이○○ 부장판사 등)과 접촉**하여 연구회 내 정식 소모임으로 부적절함을 설명 ⇨ **자발적 소모임 활동중단 또는 논의 주제를 국제인권법분야와 관련된 사항으로 변경 유도**

- 해당 법관들이 압박 또는 탄압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

- **성공가능성 低** ⇨ 불응할 경우의 대응전략 수립 필요

▣ **3인사모 적정성 여부 공론화는 행정처가 아닌 연구회장이 주도할 필요**

- **행정처가 주도하여 논의 주제 적정성 문제 제기**할 경우 그 당부와 무관하게 **'행정처가 연구회 활동에 개입한다'는 반발 가능성** (인사모에서 상고법원을 논의한 직후이므로 반발 시 위험성 더욱 큼)

- 연구회장이 연구회 내부에 '소모임의 주제가 연구회의 연구분야를 넘어선다는 우려가 있으므로,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'고 공지
  - ①다수 회원이 인사모의 부적절함에 동의할 경우 소모임 활동 중단 유도
  - ②부적절하지 않다는 방향으로 연구회 여론이 모아질 분위기인 경우 연구회장은 (아래 4항에서 볼) '공식기구인 평가위원회에 소모임 활동의 예규 및 회칙 각 제8조 위반 여부 등 적정성 판단을 의뢰하자' 고 제안하여 국면전환할 수 있음
  - 규정을 존중하는 법관들의 성향상 ①항 가능성이 더 큼 ⇨ 연구회의 자율적 자정작용으로서 바람직한 해결책이 됨
- 소모임 법관들이 다수 회원의 반대에도 연구회 내 정식 소모임의 지위를 계속 주장할 가능성은 희박함

## ▣ 4규정상 연구회 평가기구인 "연구회성과 평가위원회" 활용 가능

☑ '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행정예규'

▶제9조 제1항

각 연구회의 자료물 평가 또는 운영현황 점검 등 운영성과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을 자문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연구회성과 평가위원회를 둔다.

▶제9조 제4항

평가위원회는 각 연구회의 자료물 평가 또는 운영현황 점검 등 운영성과의 평가에 관한 자료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.

- "운영현황 점검 등"의 권한에 논의주제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임
- 관련 규정에 근거한 위원회의 의견 개진이므로, 연구회원인 법관들 입장에서 행정처 기조실장 또는 차장 등 특정 직위의 의견으로 제시되는 경우에 비하여 (행정처가 연구회 활동에 개입한다는) 심정적 거부감이 덜 할 것임

## ▣ 5활동 중단 유도 과정에서 해당 법관들 절차적으로 배려할 필요

- 공론화 이전에는 연구회장, 공론화 이후에는 평가위원회가 각 인사모 핵심 관계자와 식사 등의 사전 면담을 통해 인사모측의 진의를 확인하고, 규정상 부득이함을 안내 ⇨ 자신들이 사법행정에 의해 일방적으로 배제당했다

고 느끼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

## ▣ ⑥자발적 활동 중단 불응시 제재 방안 및 반발 무마 방안

- 행정처는 예산 및 전산자원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⇨ 연구회 전체 활동에 대하여 중단하기 보다는 인사모 활동 부분에 대하여만 중단함으로써 일반 회원과 분리 전략 필요(인사모 게시글에 대하여만 열람불가 조치 등)
- 인사모에서 연구회 명칭을 계속 무단사용하는 경우에는 **예규 및 법관윤리강령 등 위반으로 징계 가능** ⇨ 단 실제 징계에는 신중할 필요
- 연구회 일반 회원에 대하여는 지원책 제공할 필요
  - 인권 관련 각종 국제기구 출장기회 제공, 연구용역 기회 제공, 연구결과 책자 발간 등에 특별예산지원 등을 통해 연구회 일반 회원과 분리
  - 인사모 입장에서 위와 같은 혜택 때문에 소모임 활동을 중단할 가능성은 없지만, 적어도 **활동 중단의 명분**이 될 수는 있음

## ▣ ⑦활동 음성화 관련 대응방안

- **인사모 주도 법관들의 성향**에 비추어 인사모 활동을 전면 중단하기보다는 **연구회 밖에서 음성적으로 활동할 가능성**이 높음
  - 우리법연구회의 2015. 5. 상고법원에 관한 세미나 사례에서 보듯, 세간의 이목을 끌기 어렵고, 법원행정처의 부담이 적음
- 단 **사법행정 현안을 비판적으로 논의하려는 욕구**는 항상 있으므로, 이러한 요구를 분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 있음
  - ①현재 개별 추천 및 의사타진 방식으로 인적 구성이 되고 있는 법원문화연구반의 문호를 공개적으로 개방한 후 각급 법원 법관과 행정처 심의관이 함께 참여하는 법원문화개선TF로 확대개편 ⇨ 인사모 안건인 '합의부 운용 방안' 등도 법원문화개선TF의 주요 논의주제가 될 것이므로, 인사모 주요 인사들 TF 참여 유도 + 인사제도 등 일선 법관 주요 관심 현안 논의의 장에 **일선 법관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** 절차적 정당성 확보하고, 공식 의견 개진 기회 제공할 필요

- ②상고법원 관련 **비공식 간담회 등을 정례화하고, 간담회에 인사모 멤버들 참여 적극 권유**